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원채용 및 시설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9년 11월 13일
발의자 :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
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서울시 보조금 지원단체로 2019년 기준 약 780억 원에 보조금 및 기금을 교부받고 있으나, 100여개의 회원단체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각종 체육단체에 비위 사실이 계속 적발되어 서울시 체육계의 명예를 실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원채용 중 부적정한 인사규정 적용 및 위탁시설(목동빙상장) 운영 과정에서 채용 부적절성, 직원 및 강사의 인권침해 및 부적정한 시설운영으로 인한 부당 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의 한계로 명백히 밝혀지 못한 사항이 있어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가.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원채용에서 현 사무처장 부임 이후, 지인의 아들을 입사시키며 1차 서류전형에서 누락된 보훈가산점을 2차

인사위원회 심의자료에 정확한 사유 명기 없이 추가하여 1·2차 심사자료 점수가 다른 점, 유효기간이 만료한 어학점수에 가산점을 부과한 점, 낮은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부과한 점 등 의도적으로 특혜를 준 것에 대한 공익감사가 필요함.

나. 서울시체육회의 목동빙상장 소장 채용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으나 특정인물에게 유리한 근무경력에 높은 심사점수를 배정한 점, 1인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진행한 점, 시체육회 위탁운영 전 목동빙상장을 운영한 경력을 사전에 인지한 점 등 정황상 특혜를 준 의혹이 발견되었으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2018.11.)에서 '사실이 인정되나 행정조사의 한계로 확인할 수 없다'며 '내부종결' 및 '문책', '경고'에 그치고 있어 면밀한 공익감사가 필요함.

다. 또한 서울시체육회의 목동빙상장 위탁운영(2017.1.1.~ 2019.6.30.) 중 경기장 대관 업무처리를 유선접수 및 수기 대장으로 관리한 점, 사용료를 경기장 사용 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후납으로 처리한 점, 부대시설 임대계약 시 서울특별시의 승인없이 체결한 점, 경기장 유희공간 사용료를 임의로 산정하여 임대료를 징수한 점 등 대관운영을 통한 수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부당이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위탁운영 기간(2017.1.1.~ 2019.12.31.)보다 6개월 조기 계약 해지하는 것으로 무마함에 따라 면밀한 공익감사가 필요함.

라. 「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중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유명무실한 감사를 일삼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감사실은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혀 위탁 운영 중 발생한 부적정한 수익금의 환수조치 및 관계자 문책은 물론 같은 일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원 감사를 청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이 송 처 : 감사원
- 다. 기 타 : 없음

4. 첨 부 :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원채용 및 시설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
청구안 1부.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원채용 및 시설운영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지난 8개월 여 기간 동안 우리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체육회의 각종 비리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의혹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 증인·참고인의 사유없는 불출석과 불분명한 증언·진술 및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조사의 한계로 명백히 밝혀지 못한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감사해줄 것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체육회 직원채용에서 현 사무처장 부임 이후, 지인의 아들이 입사하며 그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들이 발생하며 채용 특혜의혹이 불거졌으나 체육회 내부 직원의 양심고백 이후 진술거부 및 진술변경으로 사건이 무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서울시체육회가 위탁운영한 목동빙상장의 운영과정에서 소장 채용과정의 특혜의혹, 소장의 직원과 강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발생,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부당이득이 발생하였으나 당초 위탁운영 계약기간보다 6개월 조기 계약해지하고 소장이 사직한 것으로 관련자들의 문책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해서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이러한 의혹에 대한 서울특별시체육회 스포츠공정감사실은 철

저한 자체조사와 자구책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감할 수 없는 가벼운 양형으로 면책하여 주거나 시정조치 미이행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과거 혐의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정확한 조사·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뿐 아니라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에서도 관련 사실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명백히 그 잘못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면밀한 추가 감사를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러한 불법적인 사항을 명백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체육회와 그 회원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스포츠 공정성을 확립함은 물론 이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원의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